

감정평가서

APPRAISAL REPORT

건명: 망 김대성의 상속재산관리인 김효정
소유물건(2025타경506452)

의뢰인: 인천지방법원 사법보좌관 한기철

감정평가서번호: 나이스25-207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제출처가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나이스감정평가사사무소

(부동산)감정평가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인)

오 현 식

감정평가액	이억육천육백만원정 (₩266,000,000.-)					
의뢰인	인천지방법원 사법보좌관 한기철	감정평가목적	법원경매			
제출처	인천지방법원 경매6계	기준가치	시장가치			
소유자 (대상업체명)	망 김대성의 상속재산관리인 김효정 (2025타경506452)	감정평가조건	-			
목록표시근거	귀 제시목록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기타 참고사항	-	2025.02.11	2025.02.07 ~ 2025.02.11	2025.02.11		
감정평가내용	공부(公簿)(의뢰)		사정		감정평가액	
	종류	면적(㎡) 또는 수량	종류	면적(㎡) 또는 수량	단가	금액
	구분건물	1개호	구분건물	1개호	-	266,000,000
		이	하	여	백	
	합계				₩266,000,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별 지 참 조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1. 감정평가 개요

1. 감정평가 목적

본건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송의동에 소재하고, '송의로타리' 남동측 인근에 위치한 부동산(샤인 힐 제12층 제1202호)에 대한 인천지방법원의 경매 목적을 위한 감정평가임.

2.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 조건

가. 기준가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인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하였음.

나. 감정평가조건

별도의 감정평가 조건은 없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3. 기준시점

본 감정평가의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대상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인 2025년 2월 11일임.

본건 감정평가와 관련한 사전조사, 공부발급, 실지조사, 자료수집 등은 2025.2.7. ~ 2025.2.11.에 실시함.

4. 감정평가 기준 및 근거

본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과 감정평가이론을 적용하였음.

5. 참고사항

감정평가 대상 및 목록표시는 귀 제시목록에 의함.

본건 구분건물의 내부는 관련 공부서류 집합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및 일반적인 이용상황을 고려하였음(경매 참여, 입찰 등의 경우에 현황이 도면 등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재확인 및 주의 요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6. 대상 물건의 개요

소재지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송의동 303-92, 303-1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주대로45번길 34-28]				
건물명·동·호수	샤인힐 제12층 제1202호				
용도	오피스텔				
건물의 규모	지상13층(지하층 있음)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사용승인일	2019.2.25.				
기호	층/호수	전유면적(㎡)	공용면적(㎡)	대지권(㎡)	비고
1	12층 / 1202호	71.554	33.444 (집합건축물대장)	10.731	-

* 공용면적은 집합건축물대장상 공용부분 합계임.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I.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1.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가.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양한 평가방법에 의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장가치의 도출이 요구되며 감정평가 방법으로 ①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인 “원가법”, ② 대상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인 “공시지가기준법”, ③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인 “거래사례비교법”, ④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인 “수익환원법” 등이 있음.

나. 본건은 구분건물로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라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 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체로 한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시산가액을 산정한 후 대상물건의 특성상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인근 유사부동산의 가격수준, 평가전례 등 참고가격자료를 통해 시산가액의 합리성을 검토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다. 집합건물의 가액은 건물 및 토지가 일체로 이용되는 것을 상정한 것이며, 불가분의 이용관계가 있으므로 통상 건물 및 토지의 배분가액을 나누어 제시하지는 않으나, 감정평가액을 건물 및 토지의 배분가액으로 표시한 것은 참고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며 집합건물의 일반적인 건물 및 토지의 배분비율 등을 참작하여 가액을 배분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2.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감정평가

가. 평가개요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였음.

나. 비교사례 선정

1) 인근 거래사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호	소재지 지번	명칭 및 동/층/호수	전유면적 (㎡)	대지권면적 (㎡)	거래금액(원) (전유면적당 단가 원/㎡)	거래시점 (계약일)	비고
A	송의동 ***	샤인힐 **층 **호	61.254	9.198	243,000,000 (@3,967,000원/㎡)	2022.5.12.	
B	송의동 ***	샤인힐 **층 **호	61.254	9.198	260,000,000 (@4,244,000원/㎡)	2022.4.4.	

* 거래사례의 상세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미상 처리함(이하 동일)

*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정보체계 참조

2) 비교사례 선정

본건 인근에 소재하는 거래사례로서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상의 비교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거래사례 기호 "A"를 선정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다. 사정보정

비교 거래사례는 인근지역의 정상적인 가격수준을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별도의 보정요인 없음(1.00).

라. 시점수정

한국부동산원의 인천광역시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를 활용하여 산정함.

구 분	가격지수	비고
본건의 기준시점 매매가격지수(기준시점 : 2025.2.11.)	97.47	오피스텔 지역 : 인천광역시(22.05.12~25.02.11)
비교사례의 거래시점 매매가격지수(거래시점 : 2022.5.12.)	106.06	거래시점 : 2022.05.12, 2022년04월 지수를 적용 함 기준시점 : 2025.02.11, 2025년01월 지수를 적용하여야 하나 발표이전 이므로 2024년12월 지수를 적용함
시점수정치 : 기준시점 지수/거래시점 지수	0.91901	2022.05.12 매매 가격지수 (적용:2022년04월) : 106.06 2025.02.11 매매 가격지수 (적용:2024년12월) : 97.47 시점수정치 : 97.47/106.06≒0.91901

* 기준시점 당시 미고시된 지수는 최근 고시된 지수를 적용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마. 가치형성요인 비교

조 건	구 분 항 목(세항목)	격차율		비 고
		본건	사례	
단지외부 요인	대중교통의 편의성, 교육시설 등의 배치, 도심지 및 상업,업무시설과의 접근성, 차량이용의 편리성, 공공시설 및 편익시설과의 배치, 자연환경(조망,풍치,경관 등)등	1.00	1.00	대등함
단지내부 요인	시공업체의 브랜드, 단지내 총세대수 및 최고층수, 건물의 구조 및 마감상태, 경과연수에 따른 노후도, 단지내 면적구성(대형,중형,소형),단지내 통로구조(복도식/계단식) 등	1.00	1.00	대등함
호별요인	층별 효용, 향별 효용, 위치별 효용(동별 및 라인별), 전유부분의 면적 및 대지사용권의 크기, 내부평면방식(베이), 간선도로 및 철도 등에 의한 소음 등	1.02	1.00	본건은 사례와 비교하여 층별 효용, 조망 등의 호별요인에서 우세함
기타요인	장래의 동향, 기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00	1.00	대등함
격차율 계		1.02	1.00	

바. 시산가액

기호	사례가격 (원)	사정 보정	시정 수정	가치형성 요인비교	전유면적비교 (본건/사례)	산정가액 (원)	비준가액 (원)
1	243,000,000	1.00	0.91901	1.02	$\frac{71.554}{61.254}$	266,088,524	266,000,000

* 비준가액은 산정가액 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II. 감정평가액 결정 및 의견

1. 참고자료

가. 인근 유사부동산 시세

조사 내용	
본건과 유사한 물건은 위치 및 건물상태 등에 따라 편차를 보이고 있으며 인근에 비교가능한 구분건물의 경우 건물상태, 건물용도 등에 따라 전유면적당 3,600,000원/㎡ ~ 3,900,000원/㎡ 내외 수준을 보이고 있음.	

나. 인근 평가사례

기호	소재지 지번	명칭 및 동/층/호수	전유면적 (㎡)	평가금액(원) (전유면적당 단가 원/㎡)	기준시점	평가 목적	비고
a	송의동 ***	샤인힐 **층 **호	61.25	224,000,000 (@3,657,000원/㎡)	2025.2.1.	경매	
b	송의동 ***	샤인힐 **층 **호	58.46	215,000,000 (@3,677,000원/㎡)	2024.12.30.	경매	
c	송의동 ***	샤인힐 **층 **호	62.94	234,000,000 (@3,717,000원/㎡)	2024.6.4.	경매	

[출처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2. 감정평가액 결정

기호	소재지	유형(명칭)	동, 호수	감정평가 금액(원)	비고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송의동 303-92, 303-1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주대로45번길 34-28]	샤인힐	제12층 제1202호	266,000,000	

-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은 상기 참고가격 자료(시세수준, 평가전례 등)에 의해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비준가액을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였음.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통상황 (3) 건물의 구조 (4) 이용상태
- (5) 설비내역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7) 인접 도로상태 등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9) 공부와의 차이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송의동에 소재하고, “송의로타리”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며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 건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이 소재하여 제반교통여건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3층 건물 내 제12층 제1202호이며(사용승인일 : 2019.2.25.),
외벽 : 석재붙임, 페인팅 등 마감
창호 : 샷시 창호 등

(4) 이용상태

“오피스텔” 임.

(5) 설비내역

위생설비 및 급·배수시설, 소화전, 승강기 등 구비되어 있음. 정상 작동 여부는 입찰 참가시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통상황 (3) 건물의 구조 (4) 이용상태
- (5) 설비내역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7) 인접 도로상태 등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9) 공부와의 차이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2필 일단의 평탄하게 조성한 사다리형 토지이며, 업무시설 건부지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북측, 서측으로 포장도로에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송의동 303-92 : 일반상업지역(2022-06-13) , 방화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남부교육청평생교육과-1927(2008.03.07))<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송의동 303-100 : 일반상업지역(2022-06-13) , 방화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남부교육청평생교육과-1927(2008.03.07))<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본건 구분건물의 내부는 관련 공부서류 집합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및 일반적인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건물의 구조 | (4) 이용상태 |
| (5) 설비내역 |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 (7) 인접 도로상태 등 | |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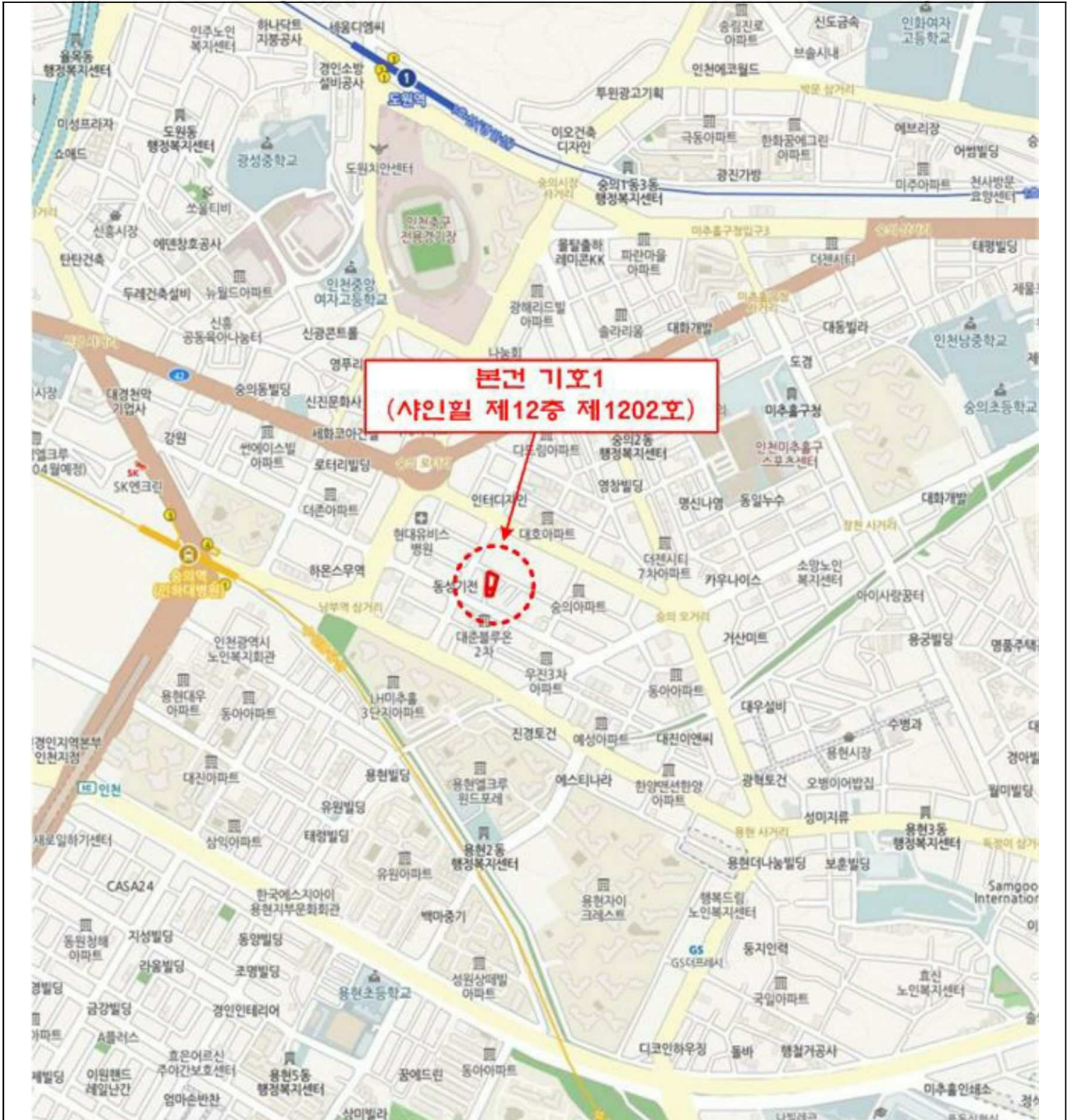
이용상황을 고려하였음(경매 참여, 입찰 등의 경우에 현황이 도면 등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재확인 및 주의요함).

본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임차권등기명령이 되어 있으므로 유의바람(등기명령일 : 2022.8.22., 임차보증금 247,000,000원, 기타사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바람).

광역 위치도



소재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송의동 303-92외 샤인힐 12층 1202호
------------	--------------------------------------



위 치 도



소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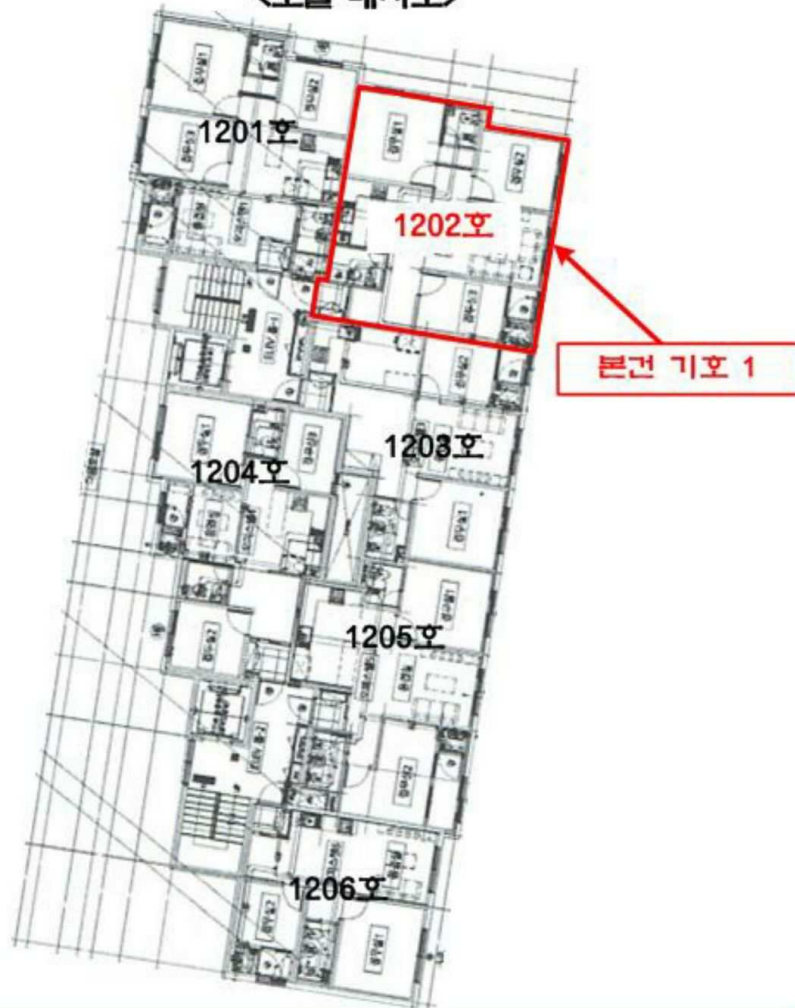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송의동 303-92외 샤인힐 12층 1202호



건물개황도

NO SCALE

<호별 배치도>



본건 기호1(샤인힐 제12층 제1202호)

* 유의사항 : 상기 도면 표시 등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는 점을 경매 참여, 입찰 등의 경우에 반드시 유의바람.

사 진 용 지



본건 전경(기호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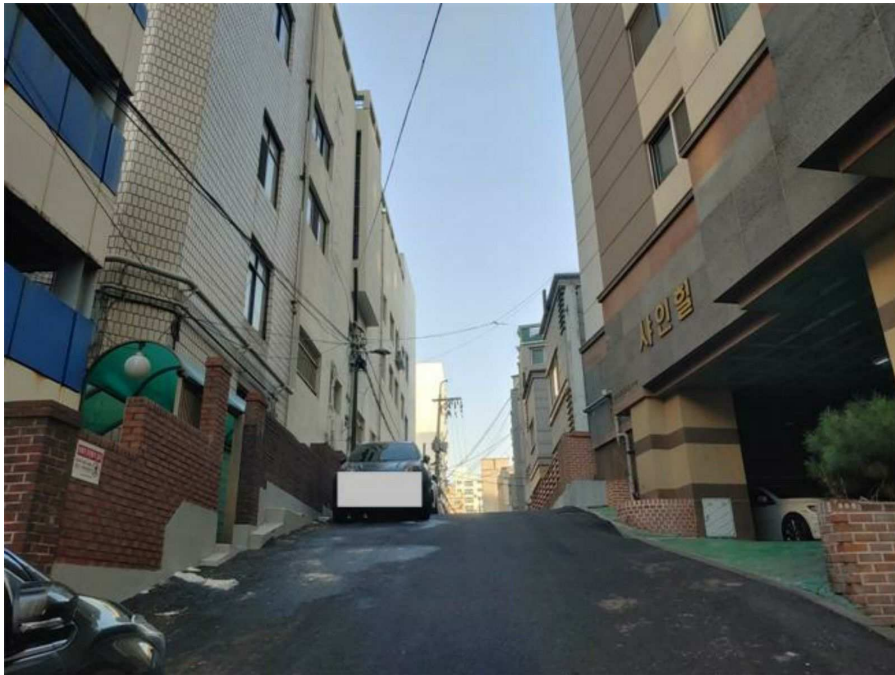


1층 공용출입구 전경

사 진 용 지



본건 현관 전경



인근 전경